

**2020년 정기점검용**  
**중장비 임자 과업지시서**

---

**2020. 3.**



**한국가스기술공사**  
KOREA GAS TECHNOLOGY CORPORATION

**경 기 지 사**

# 과업지시서

**제1조(계약명)** (주)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0년 가스히터등 공급설비 정기점검 및 정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“2020년 정기점검용 중장비 임차 단가계약”이라 한다.

**제2조(총칙)** (주)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(이하 “발주자”이라 한다)와 중기사업자(이하 “계약상대자”이라 한다)는 중장비(이하 “중기”라 한다)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

**제3조(사용목적)** 경기지사 관할 내의 가스히터 및 계량배관 정기 점검시 중량물을 분해, 조립, 이동 등의 작업을 실시하며, 이때 “발주자”的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과업의 범위)** 중기 작업구간은 “발주자”가 유지관리 하는 구간으로 하고, 필요시 “발주자”가 지시하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과업수행기간)** 과업수행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. 다만,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발주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가 합의하여 연장 할 수 있고, 긴급 정비시 특별 지정한 날로 포함 한다.

**제6조(자격조건)** 계약상대자는 중기임차 관련 자격요건을(자격증 및 관련 임대업) 갖추어야 한다. 따라서, 중장비 운전원 또한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.

**제7조(임대차 비용 및 지급)** ① 본 계약에 의한 대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며,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(영업일기준)에 발주자의 대금지급기준에 의하여 **제10조④항의 금액을 공제후 계좌로 지급한다.**

② 카고 크레인 임차의 경우 관리소간 이동이 있으며, 거리 이동에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
**제8조(작업수행 및 신원관리)** ① 작업수행시 중장비 운전자는 발주자 소속의 작

업자에 지시를 받으면, 지시 미이행시 중장비 철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, 작업 철수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작업전 중장비 운전자 신분증과 중장비 안전검사증을 확인시켜 주여야 한다.

**제9조(구조변경 및 정비)**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상시 중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잡유(엔진오일, 작동유 등)는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중기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는 “발주자”가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“계약상대자”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하며, 대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하며, 2회 이상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10조(중기 운전)** ① “계약상대자”的 중기 운전원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자체 통신수단(휴대전화)을 보유하고 “발주자”的 지시가 있는 즉시 지정장소에 출동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주 운전원의 즉시 출동이 불가하거나 작업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체 운전원을 확보하여 필요시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.

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“발주자”가 임차계약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“발주자”的 요청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
④ “계약상대자”가 작업시간을 엄수하지 못하여 “발주자”에게 추가로 비용(작업 시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등 여타 비용)이 발생한 경우 “계약상대자”가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.

**제11조(관리책임)**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자”的 지시를 준수하고 “발주자”的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중장비 운전자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

실시하여야 하며, 근무중에 “발주자”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.조치하여야 한다.

③ 업무수행중 “계약상대자”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.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.

**제12조(보험가입 및 사고처리)**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임대하는 중기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자손, 자차, 대인, 대물 등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중기의 사고 발생 시에는 “계약상대자”가 처리하여야 하며, 사고로 발생한 민.형사상 모든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진다.

**제13조(계약의 해지)**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자”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,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태만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때의 임대차 비용은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할계산하여 실적 정산한다.

**제14조(계약서류)** “계약상대자”는 중기의 등록증, 면허증, 보험가입증명서,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을 “발주자”에게 제출한다.

**제15조(계약내용의 해석)** 계약내용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며,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.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**제16조(관할법원)** 본 계약내용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**제17조(중장비 운전자 안전수칙)**

① 공급관리소 진입시 폭발위험 지역이므로 정문에서 불꽃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진입한다.

② 공급관리소 내에서는 시속 20km이하로 서행운전하며 급회전을 금지한다.

- ③ 공급관리소 진입시 각종설비 및 도로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며, 파손시 중장 비업체에서 즉시 보수한다.
- ④ 크레인 운전은 반드시 지정된 운전자가 하고, 불미스러운 행동 발생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 할 수 있다.
- ⑤ 작업 실시 전 브레이크, 클러치, 콘트롤러 기능, 와이어로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.
- ⑥ 크레인 작업을 위한 아우트리거 설치시 지하 매설물, 주변시설물, 연약지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.
- ⑦ 작업 중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정지하고, 봄대를 원 위치 한다.
- ⑧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수신호를 명확하게 하며, 운전자는 신호자의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.
- ⑨ 주행, 인양, 회전의 3방향 동시운전과 급격한 운전을 금지한다.
- ⑩ 운전자는 중량물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.
- ⑪ 크레인 작업 범위 내의 구역에는 출입을 삼가 한다.
- ⑫ 중장비업체는 당사에서 요구하는 사용 장소 및 일정에 맞추어 장비를 배차하여야 한다.
- ⑬ 운전원은 현장작업전 면허증, 중기등록증(정기검사증),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.

□ 장비 임차내역

구 분	규 격	임차단가		비 고
		4시간	8시간	
하이드로 크레인	50t	계약단가	계약단가	부가세별도
하이드로 크레인	25t	계약단가	계약단가	
카고크레인	5t	계약단가	계약단가	
굴삭기	6w	계약단가	계약단가	

- ▶ 오전 4시간(08:00 ~ 12:00) 0.5일
- ▶ 오후 4시간(13:00 ~ 17:00) 0.5일
- ▶ 일일 8시간(08:00 ~ 17:00) 1.0일